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0. 10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10월 8일

나. 발 의 자: 김길자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10. 19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,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
(안 제5조의2)
-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 및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- 본 안건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,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  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  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  
-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%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,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 및 경제적 곤란 경감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,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269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일

발의자 : 김길자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,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
(안 제5조의2)
- 나.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 및 제6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0. 10. 8. ~ 10. 12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프로그램 개발 등)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·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·추진하여야 하며,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

#### 7.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지원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6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5조의2(프로그램 개발 등) ①</u> <u>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·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·추진하여야 하며,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(보조금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</u>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</u>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지원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